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 제한 등
제도정비〉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18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¹⁾ 국방부장관이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u>준수 사항</u>) (생략)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u>준수 사항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u><신설></u>	③ 국방부장관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 경우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군 매점 및 군 마트 등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²⁾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상품 등을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와 그 가족 등이 해당 시설에서 구매한 대량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이나 재판매업체 등을 활용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거래행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바 있음.

이로 인하여 시중에 비하여 저렴한 군 매점 등의 물품이 일반 시장으로 적지 않게 유입되어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국방위원회는 재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음.

그러나 현행 제15조 재판매행위 금지규정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국방부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2)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군복지단 규정 4-1-1 마트운영 제25조(마트 이용 대상) 제3호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한 자”에 대한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이익한 조치인 이용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재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재판매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시설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이용을 장려하며,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9)은 영리목적의 재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지도·단속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25년 9월 2일)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